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

# 검 토 보 고 서

## 1. 회부경위

- 의안번호 : 제2404호
- 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- 제출일자 : 2021년 5월 25일
- 회부일자 : 2021년 5월 31일

## 2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는 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을 설립하고 법인의 운영 및 시설관리, 공연예술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음
- 나. 2021회계연도 1차 추경예산 편성에 앞서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의 추가 출연 여부에 대해 동의를 얻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- 1) 사무명 : 세종문화회관 출연금

## 2) 추진근거
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-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·운영 조례

## 3) 사무내용

- 세종문화회관의 운영
- 공연예술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
-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·관리, 보급 및 조사·연구
-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
-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위탁하는 사업

## 나. 추경개요

### 1) 추경금액 : 843,632천원

- 총 출연금액 35,362,789천원 (기정 출연금액 34,519,157천원)

※ 예산심의과정에서 금액 변동 될 수 있음

### 2) 출연금 편성 내용

- 임대료 감면에 따른 수입감소분 보전 : 97,476천원
- 삼청각 하반기 시설 및 운영비 지원 : 746,156천원

### 2) 추경필요성

- 코로나19 관련 임대료 감면에 따른 수입 감소분 보전
  -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객석 빼어앉기 등으로 인한 수입의 감소, 코로나

## 19 방역대책 시행으로 인한 지출 증가 등 재단 재정상황 악화

-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 정책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세종문화회관 임차인(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포함) 지원을 위해 6개월 간 임차료의 50% 감면 조치하였기에 이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지원 필요
- 삼청각 하반기 시설 및 운영비 지원('21.8~12월)
  - 서울시 계획에 따라 삼청각은 '전통문화공연과 한식체험'을 할 수 있는 문화복합공간으로 리모델링 중으로 21.9월 재개관 준비 중에 있음
  - 당초 '수익창출형' 위탁사업과는 달리, 삼청각은 리모델링 공사 중에는 '행정재산관리위탁'에 의거, 재산관리 업무(시설·안전관리등)를 수행하였으며, 영업중단(휴업)에 따라 휴직중인 무기계약직(18명)에 대해 휴업수당(평균임금 70%)을 지급하고 있음 \*3명 100%지급(노조전임1. 위탁업무수행 2)
  - '행정재산 관리위탁' 이 '21.7.31字로 만료됨에 따라, 하반기('21.8~12월)에 대한 무기계약직 21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시급함
- \*행정재산관리위탁(1차): '20.7.1~'21. 7.31
- \*행정재산관리위탁(2차): '21.8.1~'25.12.31 (7월중 체결 예정)
- 코로나19로 인하여 재단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는 상황에서 삼청각 재개관을 위한 시설운영비 및 삼청각 소속 근로자 인건비(21명)에 대한 서울시 예산지원이 필요함

## 다.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기관 개요

1) 소재지 :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

2) 규 모 : 대지  $55,758m^2$ , 건물  $63,396m^2$  (지하 3층, 지상 6층)  
- 공연장(세종대극장, M씨어터, 체임버홀, S씨어터), 전시관(세종  
미술관, 세종충무공이야기), 교육시설(세종예술아카데미) 등

3) 전경 및 위치도



## 4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1)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## 2)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4조(사용료)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(時價)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(評定價格)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월할(月割) 또는 일할(日割)로 계산 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, 사용 · 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(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 한다. 이하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같다)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(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)을 적용할 수 있다.

제16조(사용료의 조정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사용 · 수익허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(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)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

## 3)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

제26조(대부료의 요율) 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, …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산관리인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의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약정한 대부료의 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.

나. 관련 방침 :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 지원 추진계획

(자산관리과-14889, 2020.12.31)

1) 시유재산 6개월 간 임대료 50% 감면 및 공용관리비 감면

2) 임대료 환급·감면에 따른 환급분, 손실분 등은 추가경정예산 편성

다. 예산조치 : 2021년도 1차 추경예산 편성

라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동의안 개요

- 본 동의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2021년 1차 추경예산 편성에 앞서 세종문화회관에 관한 추가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음.

### 나. 출연의 필요성

- 서울시는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 서 서울시가 지역상권 사용료를 인하함으로써 사용료 인하의 민간 확산을 견인하기 위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기준<sup>1)</sup>에 부합하는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6개월 간 임대료 및 공용 관리비를 감면하는 지원방안<sup>2)</sup>을 마련하였음.

#### 〈추경내역 세부내역〉

(단위:천원)

연번	사 업 명	소요예산	비고
계		843,632	
1	코로나19로 인한 임대수입감소 보전	97,476	
2	삼청각 무기계약직 직원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	746,156	

1) 소매업 평균매출액 50억원 이하, 음식점업 10억원 이하(「중소기업기본법」 시행령 별표3)

2) 서울시 「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 지원 추진계획」 방침.

- 코로나19로 인한 임대사업장의 임대료 감면으로 인한 임대수입 감소분을 보전하고, 삼청각의 하반기 운영비 중 무기계약직 21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및 시설 운영비를 증액하려는 것임.

### 〈임차료 감면 현황〉

(단위 : 원)

시설명	입주업체		21년 사용료(연간)	감면액
	상호	대표자		
회관	악기점	조뮤직	조병문	27,751,016
	카페	카페베네	박정신	180,100,000
북 서울 꿈의 숲	카페	전망대	안현정	67,217,550
		테라스		10,280,601
	레스토랑	라포레스타	이경애	3,833,241
	(이마트24)	편의점	정석윤	15,969,560
		스낵하우스		19,193,874
	카페	베이커리	박진석	4,798,468
합계			33,330,000	4,200,493
			469,570,886	97,476,283

### 〈삼청각 하반기 시설 및 운영비 지원 세부 내역〉

#### - 인건비(급여, 제수당, 명절상여 등)

$$\text{급여 월 } 3,675\text{천원} * \text{무기계약직 } 21\text{명} * 5\text{개월} = 385,875\text{천원}$$

#### - 일반관리비(4대보험, 일반운영비 등)

· 4대보험(사용자 부담금)

$$\text{월 } 9,065\text{천원} * 5\text{개월} = 45,325\text{천원}$$

· 일반운영비(공공요금, 사무관리비 등)

$$\text{공공요금 월 } 29,874\text{천원} * 5\text{개월}$$

$$\text{사무관리비 월 } 9,813\text{천원} * 5\text{개월} = 198,437\text{천원}$$

#### - 시설운영비

· 시설용역(전기, 방재, 영선, 경비, 미화 등)

월81,340천원 * 5개월	=	406,700천원
·시설유지(삼청각 시설 유지관리 보수 및 공사)		
월17,444천원 * 5개월	=	87,220천원
·안전관리(식품위생, 산업안전보건, 방역 등)		
월12,562천원 * 5개월	=	62,810천원
<b>총 운영비용</b>		<b>= 1,186,367천원</b>
※ 2021.8.~2021.12.에 대한 월임대료 예상수입금이 440,211천원으로 책정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<u>출연금은 746,156천원으로 책정</u>		

## 다. 출연규모의 적정성

- <서울시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>에 따라 세종문화회관 및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입점업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업체 8곳에 대하여 9,748만원의 감면을 결정하였음.

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세종문화회관의 공연과 전시취소 및 임시휴관으로 인한 공유재산 임대사업자의 영업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감면조치 결정을 한 8곳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업체이므로, 해당 조치는 타당하다고 판단됨.

- 삼청각의 관리방식은 ‘수익창출형 민간위탁’으로서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, 재료비 등의 지출을 충당하여 오다가 2020. 7. 1.부터 ‘행정재산의 관리위탁’으로 변경되었음.

‘행정재산의 관리위탁’은 특수 시설물(병원, 청소년 수련관 등 대부분 특별한 기술·장비 및 능력을 요하는 시설물)을 그 용도에

맞게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, 일반재산의 관리·처분 업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를 수탁기관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일반재산의 위탁관리와 차이<sup>3)</sup>가 있음.

#### 〈관리방식 전환〉

삼청각 사무		기 존	변 경
시설 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식·음료 사업</li> <li>· 조경, 한옥, 기타 시설물 비품, 장비 등 유지관리사업</li> <li>· 기타 위탁재산의 운영과 관련된 사업</li> </ul>	민간위탁	행정재산의 관리위탁 (공유재산법 제27조)
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문화사업 (전통문화공연, 혼례, 문화강좌 및 문화체험 등)</li> </ul>	민간위탁	세종문화회관 고유사업화

현재 세종문화회관은 ‘행정재산관리위탁’에 의거하여 삼청각에 대한 재산관리 업무를 수행 중(2020.7.1.~2021.7.31.)으로 계약 연장(2021.8.1.예정)에 따른 추가 예산(21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)이 필요함.

- 올해 9월에 재개관하는 삼청각은 기존의 식음사업에 편중되어 있던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, 일화당 등 공연장에서 세종문화회관의 9개 예술단을 활용한 정기·기획 공연과 외부 대관공연 등의 문화사업을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.

하지만 삼청각 소속의 21명 무기계약직 직원 중 16명이 식음사업과 관련 업무 종사자이기 때문에 향후 세종문화회관이 식음사업을 임대계약으로 전환할 경우 관련 인력에 대한 직무전환 및

<sup>3)</sup> “일반재산의 위탁관리”와의 차이(행정안전부 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·처분 기준」 38면)

임대업체에 고용승계가 문제될 소지가 있음.

## 라. 종합의견

-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공연의 취소 또는 무관중 온라인 공연 진행, 객석 빠져앉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세종문화회관 임차인(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포함)의 지원을 위해 6개월 간 임차료의 50% 감면 조치한 것인데 8개 업체 모두 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업체이므로 해당 조치는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세종문화회관은 기존의 식음사업 중심의 삼청각 운영에서 탈피하고 일화당 등 공연장을 중심으로 한 시민 문화공간으로 운영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만큼, 관련 시설의 리모델링과 콘텐츠 계획과 더불어 기존 삼청각 소속의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인력운용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입법조사관	연락처
노 재 윤	02-2180-8118